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504
결재일자	2016.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17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1차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월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7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1차 추진계획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복지파수꾼 등 50+ 보람일자리 제공 - 민선6기 공약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12개월)
- 대 상 : 만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중 참여 희망자
- 지 원 :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월 458,850원) *16년 427.5천원
 - 산출내역 : 458,850원 = 57시간 × 8,050원(사급 6,650원+교통비 1,400원)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사업은 월895,320원 지급(산출내역 불임1. 참조)
- 추진내용 : 5개 사업 총 274명 선발 및 배치

연번	구분	사업내용	인원	추진일정			수행기관
				모집	교육	활동	
		합계	274				
1	50+컨설턴트	재무, 경력개발, 관계, 여가, 건강 등 분야별 컨설팅	35	'16.12.28 ~ '17.1.13	'17.2.1 ~ 2.10.	'17.2.13 ~ 12월	50+재단
2	50+모더레이터	개인별 맞춤형 학습설계, 교육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65	'16.12.28 ~ '17.1.13	'17.2.1 ~ 2.10.	'17.2.13 ~ 12월	
3	50+취업지원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처 발굴 및 진로지도	70	'17.1.16 ~ 1.31.	'17.2.14 ~ 2.27	'17.3.2~ 12월	
4	어르신일자리 코디네이터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판로개척 및 컨설팅 지원 등	50	'17.1.9 ~1.18.	'17.1.31 ~.	'17.2.1 ~ 12월.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5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을 위한 차량 운전 및 승하차 지원 등	54	'16.12.26 ~ '17.1.13	'17.1.16 ~ '17.1.26	'17.2월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 소요예산 : 총 1,797,603,380원(시비 100%)
- 추진기관 : 50+재단, 한국노인력개발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II

세부계획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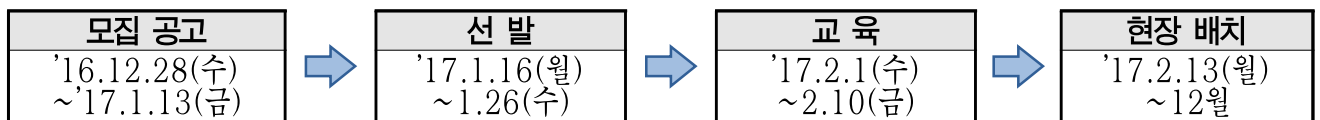
50+컨설턴트

추진방향

- 50+상담센터 상담 매뉴얼 및 온라인 상담예약시스템 구축
 - 매뉴얼 : 활동처별 리더 지정, 상담 프로세스 구축, 소통 및 협업 채널 등
 - 온라인 상담예약시스템(2월 시범운영) : '제2인생설계 준비 진단지표' 작성·예약
- 매월 정책조사 및 상담결과 분석·공유, 찾아가는 상담 기획 및 진행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1~12월(12개월)
- 모집인원 : 상담분야 35명 ※ 추후 2차 모집 예정(25명)
 - 우대조건 : 상담, 컨설팅, 전직지원, 직업상담, 생애설계 등 관련 분야 경험자
- 활동처 : 서부 50+캠퍼스 7명, 중부 50+캠퍼스 7명, 동작 50+센터 6명
- 사업내용
 - 생애 7대 영역 상담 및 컨설팅, 사후관리
 - 개인별/대상별 맞춤형 정보·지원제도 제공 및 안내
 - 기관 이용자 및 온라인예약자 방문상담,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상담 기획 및 운영, 홍보 등
- 모집선발 : 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



- 교육 : 공통(24시간 이내) 및 직무(24시간 이내)
 - 공통교육 : 50+정책, 자기탐색, 직업윤리, 성희롱 예방, 커뮤니티 등
 - 직무교육 : 컨설턴트 역할, 사회적경제 이해, 상담일지 작성, role play, 상담실습 등
- 운영기관 : 서울시 50+재단

사업비 : 200,657천원

추진방향

- 50+당사자로서 체계적인 학습설계 지원 및 50+세대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 강화
 - 캠퍼스·강사·수강생의 의사소통 조율, 수강생 욕구조사, 교육평가 모니터링 등
 - 활동가에게 능동적 역할 부여로 자신감 및 만족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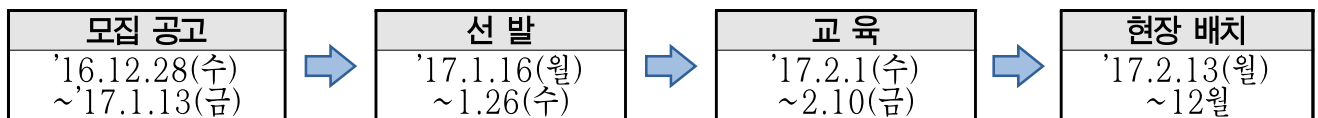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1~12월(12개월)
- 모집인원 : 65명
 - 우대조건 : 교육·워크숍 기획 및 진행, 평생학습, 인터뷰 작성 등 유경험자
- 활동처 : 6개소

활동처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노원50+센터	도심권50+센터	동작50+센터	영등포50+센터
배치인력(명)	16	15	8	10	8	8

 사업내용

- 욕구조사, 상담을 통한 자기 주도형 맞춤형 학습설계 지원
- 참여자 안내, DB관리, 교육과정 운영지원
- 만족도 조사, 진행 모니터링 및 교육 평가 등

 모집선발 : 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 **교육 : 공통(24시간 이내) 및 직무(24시간 이내)**

- 공통교육 : 50+정책, 자기탐색, 직업윤리, 성희롱 예방, 커뮤니티 등
- 직무교육 : 모더레이터 역할, 효과적인 회의기법,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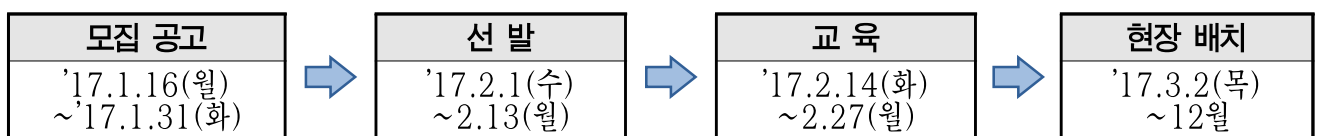
 운영기관 : 서울시 50+재단 **사업비 : 335,512천원**

추진방향

- 취업지원관 직무 전문성 제고 및 현장 활동지원 강화
 - 핵심업무의 직무교육 강화 및 그룹워크숍 등을 통한 눈높이 의사소통능력 개발
 - 현장 동행 등에 따른 출장비 지원, 업무메일 및 명함 제공
- 희망학교에 한해 활동 연속성 보장을 위한 1교 2명 배치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1~12월(12개월)
- 모집인원 : 70명
 - 우대조건 :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기업체·경영자단체·노동조합 등 경험자
- 활동처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78개교 중 배치 희망고교
- 사업내용
 - 취업지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취업진로 상담, 복귀자 관리
 - 취업행정 : 취업정보 조사, 취업업무 행정지원
 - 취업지원 : 취업처 발굴(기업 방문), 동행 면접, 취업박람회 인솔, 현장실습(인턴십)
- 모집선발 : 1차 자격심사(재단), 2차 서류심사(학교), 3차 면접진행(학교)



- 교육 : 공통(24시간 이내) 및 직무(24시간 이내)
 - 공통교육 : 50+정책, 자기탐색, 직업윤리, 성희롱 예방, 커뮤니티 등
 - 직무교육 : 취업지원관 직무, 노동관련 법규 및 정책, 특성화고 청소년 이해 사회복지, 청소년 성희롱 방지교육 등
- 운영기관 : 서울시 50+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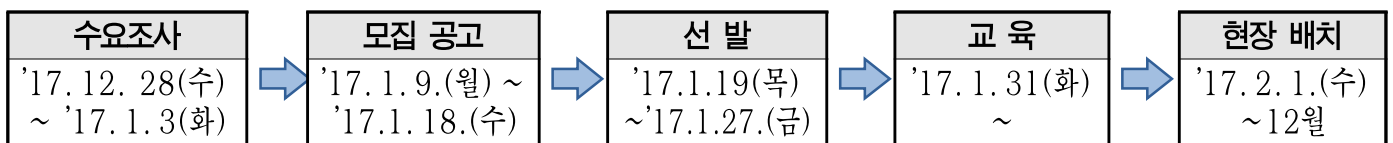
 사업비 : 346,010천원

□ 추진방향

-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전문적 사업 지원 역할 수행
 -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수행기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어르신일자리 사업 활동기간(연중)에 맞춰 코디네이터 배치기간 연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1~12월(12개월)
- 모집인원 : 50명
- 활동처 : '17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비영리기관 등
- 사업내용
 - 어르신생산물 판로개척 및 컨설팅 지원, 신규사업 수요처 개발 등
 - 시니어택배 사업 등 시장형 사업단 운영 및 관리 지원
 - 어르신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설립·운영 지원
 - 기타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모집선발 : 1차 서류심사(노인인력개발원), 2차 면접심사(각 수행기관)



○ 교육

- 공통교육 :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이해, 50+정책 등(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직무교육 : 사업단별 특성 및 활동내용에 따른 개별 교육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운영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부

□ 사업비 : 237,525천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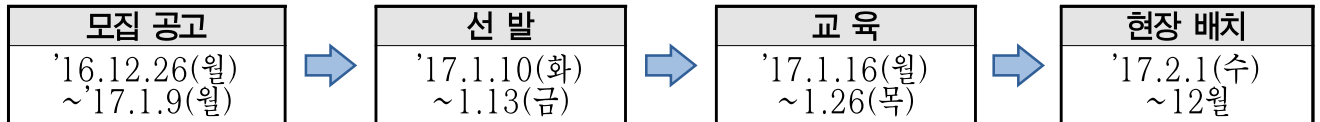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12월(12개월)
- 모집인원 : 54명(콜택시 운전원 50명, 관제원 4명)
 - 자격 : 만50세~67세 서울시 거주,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가스안전교육 이수
 - ※ 콜택시 운행차량은 LPG 차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 가스안전교육 2시간 이수 필요
- 활동처 : 시내 12개 차고지, 관제원은 본부 근무

활동처	계	개화	관악	공동	도봉	돈암	삼각지	상계	성내	수색	수서	시흥	은평
배치인력(명)	50	3	4	6	2	9	5	5	6	4	4	1	1

 사업내용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 및 장애인 승하차 지원
- 시각장애인 민원보조, 병원이용 보조
- 외출 및 장보기 보조 등 생활서비스
- 모집선발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교육**

- 공통교육 : 50+정책 및 보람일자리, 직업윤리, 성희롱 예방 등(50+재단)
- 직무교육 : 집합 교육, 시각장애인 체험 교육 및 차량 운전 교육 등(센터)
- 운영기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세부내역

- 활동비 : 월 895,320원(실지급 823,060원) ※ 산출내역 붙임1. 참조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월 84시간(21일) 내
 - 공휴일 근무 시에는 대체휴무 제공(근로자 사전 공지)
- 인력배치 : 콜택시 수요가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지원 근무
 - 2개조 편성 : 오전 6:00~10:00, 오후 18:00~22:00

 사업비 : 583,676천원

III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1,797,603,380원(시비 100%)**

○ **서울시 50+재단 : 976,402,10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50+컨설턴트	50+모데레이터	50+취업지원관	공통예산	
합계		200,657,250	335,512,500	346,010,250	94,222,100	
사업비	활동비	활동비, 상해보험		181,207,250	306,702,500	315,635,250
	교육비	강사비 등		12,815,000	19,555,000	23,100,000
	회의비	회의운영비		2,730,000	2,975,000	3,230,000
		면접진행비		740,000	630,000	0
		홍보비		400,000	450,000	525,000
		기타진행비		770,000	1,300,000	2,120,000
		사무용품		1,995,000	3,900,000	1,400,000
운영비	회의비	기획회의운영비		월례회의 10회		700,000
		기획회의 자문비		전문가 자문수당 4회		1,800,000
	수수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문자 메시지 발송		9,480,000	
	대여비		노트북 대여 6대, 전담매니저 PC 3대, 복합기 1대		9,360,000	
	업무진행비		외부회의, 관련 세미나참가비용 등		1,200,000	
기타 진행비		외부 강의장 대여, 교통카드 충전 4장 활동사례 집제작100부, 워크숍 2회		7,210,000		
기타	전담매니저 급여		1,763,700x3인x11개월 ('17 물가상승률 3.71% 반영)		58,202,100	
	4대 보험료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6,270,000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37,525,00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세부 산출내역	금액
합계			237,525
사업비	활동비	458,850/월 × 10개월 × 50명	229,425
	교육실비	10,000/회 × 2회 × 50명	1,000
운영비	상해보험	50,000/활동기간 × 50명	2,500
	교육 및 간담회 운영	1,200,000 × 3회 (운영비, 대관료, 강사수당 포함)	3,600
	기타 경비	기타 경비 (현장방문, 문구, 서류배송 등)	1,000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 583,676,28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세부 산출내역	금액
합계			583,676,280
활동비		월895,320원 × 54명 × 11개월	531,820,080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1,856,200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307-11)

교부근거

- 서울시 50+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단의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행정·재정지원)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등)

IV

향후계획

- 2016. 12월 **사업계획 통보 및 협약체결**
- 2017. 1~12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2017.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붙임 1. 2017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활동비 산출 내역 1부.
2. 보람일자리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활동비 산출내역

[1일 4시간, 주 5일, 월 21일 개근시 기준]

- 활동비 월 지급액(보험료 포함) : 895,320원
- 활동비 월 실지급액 : 823,060원
- 활동비 산출내역 : 보수 + 교통비 + 주휴수당 + 월차수당

① 1개월 보수 : 월 688,800원

- 1일 임금 : 시급 8,197원('17년 생활임금) × 4시간 ≙ 32,800원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십원 단위 이하 올림하여 산정
- 1개월 임금 : 32,800 × 21일 = 688,800원

② 교통비 : 월 29,400원

- 1일 1,400원 × 21일 = 29,400원

③ 주휴수당(1일 임금 × 개근한 주) : 월 144,320원

- 1일 임금(32,800원) × 4.4일(1년 52주÷12개월) = 144,320원

④ 월차 수당(1일 임금) : 32,800원

- 보험료 : 사업 참여자 72,260원, 서울시 부담 87,300원

보험종류		사업 참여자 부담	사용자(서울시) 부담	계
계		72,260	87,300	159,560
국민연금		월보수액의 4.50% = 38,670	월보수액의 4.50% = 38,670	77,340
건강보험		월보수액의 3.06% = 26,290	월보수액의 3.06% = 26,290	52,58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 1,720	건보료의 6.55% = 1,720	3,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월보수액의 0.65% = 5,580	월보수액의 0.65% = 5,580	11,160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	월보수액의 0.85% = 7,310	7,310
산재보험		-	월보수액의 0.90% = 7,730	7,730

- 1인당 1개월 총 사업비(월 지급액 + 시 보험부담금) : 982,620원

[붙임 2]

2017 보람일자리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 (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특별시50플러스(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보람일자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보람일자리사업」을 “재단”에게 대행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보람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3. 사업내용 : 50+컨설턴트, 50+모더레이터, 50+취업지원관
4. 참여인원 : 만 50세 이상 67세 미만의 퇴직한 서울시 거주자
5. 근무조건 : 일 6시간, 월 57시간 이내(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시간당 8,050원, 다만 교육지원금은 교육 필수 시간 수수료 후 사업기간동안 현장 활동한 자에 한하여 지원
6. 소요예산 : 금976,402,100원(금구역칠천육백사십만이천일백정)

제3조(대행범위)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대행시키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자 모집, 교육·실습, 활동처 배치, 활동관리 및 사업운영
2. 보람일자리 사업 대시민 홍보
3. 보람일자리 사업 현장평가 및 성과결과 보고
4. 기타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가 “재단”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재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 대상지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시”의 시책변경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 관리인원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인건비(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와 부대비용(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소요 경비 산출내역·사업내용 등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③ “재단”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재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사업종료일 또는 협약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에 관한 서류

2.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 개인용)
3. 상담의견서 및 근로계약서
4. 참여자명부·급여대장명부·급여입금계좌내역 및 근무상황부
5. 활동일지·금전출납부·지출증빙서류 및 사업현황보고서 등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협약에 의한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단”은 제1항의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되, 이를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이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인계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가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④ “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재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 할 수 없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 ② 본 협약 이후 사업에 대한 “시”의 방침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③ 사업추진 관련 각종 서식은 ‘2016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추진계획’ 방침서에 따른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26일

“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 이 경 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